

첫째, 동 조례안 제2조(기금의 조성)별표 1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난방비를 50%씩 균등하게 지원하던 것을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별표 1 >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75%초과	75%이하~50%초과	50%이하	0%
지원금 출연요율	70%	60%	50%	0%

이는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이 높아지면 난방비 지원율을 연동하여 높여줌으로써 영향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가동률은 높아져 자원회수시설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둘째, 동 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제1항 제2호에서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출연금”을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폐촉법의 개정(1999. 2. 8)에 따라 신설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위법이 개정된 지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조례에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이번에 제출된 4건의 조례개정안이 모두가 이런 상태이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환경국소관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과의 관계,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여 서로 상충되거나 직제개정으로 인하여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용어 등 기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의견입니다.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등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 발의)제2항에 의거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제출토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국에서 4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였는데 모두 목전에 찬 10일전에야 제출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는 9. 29자로 회부되어 공휴일을 제외하면 5일전에 회부된 것입니다.

생각컨대 이와 같은 의안들이 입안되면 우리위원회 위원님께 그에 대한 사유와 당위성 등을 설명드리고 이해하시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과별, 팀별, 담당별로 몇 개월씩 준비하고 검토하여 제출된 의안들을 단 몇 일만에 검토와 심사를 심도있게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차후 의안 제출시에는 조례규칙 심의전에 위원님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아울러 의안과 관련된 자료 등도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정말 검토와 심사에 도움되는 충분하고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늦게나마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원소각장 가동중지와 다이옥신 검사결과 조작발표 책임자 처벌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청원 소개의원 의견서

(다음 페이지에 계속)

청원건명	노원 소각장 다이옥신 조작 책임자 처벌 및 안전성 확보		
청원인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2동 롯데아파트 11동 1401호	
	성명	양순중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부두완 의원		
소개년월일	2003. 10.		
<p>○ 노원소각장 2호기 법정 정기검사 다이옥신 검사결과 0.445ng인 것을 서울시는 0.094ng으로 조작 발표하여 국민은 물론 소각장 운영 전반에 불신에 불신을 더하고 있으며,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환경, 건강, 사회, 경제 등의 불안과 피해를 국민과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p> <p>○ 주민협의체의 지속적인 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옥신 저감시설 : 백필터방식, 활성탄 필터 - 다이옥신 시료채취 상시 가능하도록 - 협약서에 준한 약속이행 등이 묵살당했으며,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p>○ 서울시는 가동률을 높이는데 급급한 나머지 단계적인 절차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담당공무원은 한건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p> <p>○ 소각장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적자부분 때문에 안전성과 환경피해를 무시한다면 차후 몇 백배의 추가경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주민과 협약한 사항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준수하고 진솔하게 주민 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담당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각 소각장 가동을 중지하고 · 담당공무원은 양심선언과 책임을 · 동조한 (주)한국시거스 운영사 교체 <p>기자의 전화내용 기사를 보면 서울시 청소과 한상열 과장처럼 거짓말을 하는 공무원은 처음 보았다, 한 마디로 주민과 함께 고발하고 싶은 심정이다. 서울시와 주민간에 불신의 벽이 지속된다면 실패한 소각장으로 폐쇄해야 하며 환경학습장으로 전용되어야 합니다.</p>			

노원소각장 가동중지와 다이옥신 검사결과조작발표 책임자 처벌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I. 제 안 경 위

- 청원인 : 서울시 노원구 중계2동 롯데(아) 11-1401호 양순중
- 소개의원 : 부두완 의원(교육문화위원회)
- 접수 및 회부일자
 - 접수 : 2003. 10. 6
 - 회부 : 2003. 10. 8
 - 접수번호 : 제52호

II. 청원요지

- 노원소각장은 반기1회 이상 측정하게되어 있는 다이옥신 검사를 2호기에 대하여 2003. 5. 29 실시하였으나 통상 60일이 지나 발표하던 것을 미루어오다 측정결과 0.445ng임에도 이